

(앞면)

# 위법계약 해지 요구서



금융소비자는 『금융소비자보호법』 제 47 조 및 시행령 37 조에 의거하여 위법계약에 대한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계약해지 요청 전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 [사전 체크리스트]

구분	체크리스트	고객 확인	직원 확인
해지요구조건 (모두 충족 必)	계약의 형태가 계속적(펀드 투자 포함)일 것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	계약기간 종료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그 계약에 따라 고객의 재산에 불이익이 발생할 것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해지 가능 기간	다음 1), 2) 중 <b>먼저 도달한 기간</b> 까지 해지 요구 가능 1) 당사의 법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 년 이내 2) 계약서류를 받은 날(또는 계약체결일)과 다음 어느 하나에 따른 날 중 늦은 때로부터 5 년 이내 · 투자성 상품: 최초 수수료 납부일 · 보장성 상품: 최초 보험료 납부일 · 대출성 상품: 계약에 따른 당사의 금전 등 지급일 ※ 21.3.25일 이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해지가가능사유	· 적합성 원칙 위반 (§17③) · 적정성 원칙 위반 (§18②) · 설명의무 위반 (§19①, ③) · 불공정영업행위 (금소법 §20①) · 부당권유금지 위반 (금소법 §21)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### 고객 정보

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(사업자등록번호)	
전화번호	휴대폰번호	이메일	
주소			
계좌번호		계좌 관리점	
결과통보 방법 (택)			
<input type="checkbox"/> 우편		<input type="checkbox"/> 유선	<input type="checkbox"/> 이메일

